

의안번호	2213804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계번호	25C5810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이중돌봄을 정의하고, 가족실태조사 대상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, 실태조사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억 4,200만원(연평균 2억 6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가족실태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안 제20조)	-	-	-	-	1,342	1,342	26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(가족실태조사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및 이중돌봄 현황을 파악하고,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2조(건강가정교육)	교육내용에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0조(가족실태조사)	○	
2	안 제32조(건강가정교육)	×	- 실시 중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은 결혼준비교육, 부모교육, 가족윤리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,¹⁾ 건강가정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예산 지원(출연금)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음
 - 개정안(안 제32조)과 같이 “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” 또한 교육내용의 하나로 들어가도록 규정하는 경우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는 제외함
 - 참고로 2025년 기준 가족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²⁾예산으로 9억 8,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음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실태조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1) 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2)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상교육은 가족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 대상에 현행 생활실태 외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는 경우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조사표본 변경과 적용을 위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이중돌봄을 포함한 조사는 시행일을 반영한 시점(2026년)이 아닌 차기 조사(2029년)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
 - 이중돌봄 현황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서 현행 조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소요를 산출함
 - －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사전연구 및 부가조사 비용은 변동이 없고(330백만원), 본조사 비용이 24억원(현행: 10억 5,800만원)이 소요³⁾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13억 4,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가족실태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가족실태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안 제20조)	—	—	—	1,342	—	1,34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3) 여성가족부는 이중돌봄 규모 파악을 위해 조사표본 확대(현행 12,000가구 → 20,000가구)가 필요하고,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